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1)]

한국산업은행 팀장 **김 명 수**
(damduck@kdb.or.kr)

1. 서론

녹색성장 정책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환경개선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여 국격을 높이고자 하였던 지난 정부의 주요 정책이었다. 이를 위하여 대통령 직속기구인 녹색성장위원회[2)]를 설립하고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 저탄소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2010년에 제정하였으며, 2012년에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도 제정한 바 있다.

이러한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녹색산업과 기술에 대한 금융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녹색산업과 녹색기술에 내재하는 위험과 수익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녹색성장이 주요 국가 정책으로 논의가 집중되면서, 녹색금융에 대한 부분도 함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아직까지 녹색금융에 관한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UNEP에 따르면 녹색금융에 대하여 '자원 및 에너지효율 향상, 환경을 개선하는 상품 및 서비스 생산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과 환경파괴 활동에 자금 공급을 중단하는 활동, 즉 환경리스크 관리'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 여러 자료를 살펴보면 녹색금융과 유사하게 환경금융, 기후금융, 탄소금융, 에너지금융 또는 지속가능금융 등의 단어 또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우리가 말하는 녹색금융이란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환경을 새로운 동력으로 삼는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제공되는 금융서비스' 등의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즉, 녹색금융이란 경제성장, 환경개선 및 금융산업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복합적인 목적을 지닌 미래지향적인 금융으로, 무엇보다 녹색경제활동이라 할 수 있는 저탄소 혹은 환경친화적인 새로운 에너지 · 자원 활성화와 관련된 모든 생산활동 등에 제공되는 금융서비스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1) 본고는 김은정 · 김명수 · 김윤명, 기후변화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2013)의 주요내용을 요약하고, 수정 · 보완한 것임.
2) 동 위원회는 2013년 3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총리 소속으로 변경되었음.

법률」 및 은행 녹색금융 운용모범규준 등 녹색금융에 관한 다양한 정책과 법제 등이 제정되고 이행되어 왔다. 이와 같이 녹색성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녹색금융의 역할이 보다 더 중요시되고 있는 바, 이러한 녹색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요 해외사례와 법제 등에 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본고에서는 녹색금융에 관한 국제협약과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의 동향과 법제 등을 살펴보고,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녹색금융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 등을 바탕으로 현재 금융권의 역량을 고려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금융의 발전방향과 추진전략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녹색금융의 의의 및 필요성

가. 녹색금융의 의의

녹색성장은 2005년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을 위한 구상으로 아시아 ·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s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UNESCAP)에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시작된 것으로[3], 성장단계에서 환경오염을 방지하면서 빈곤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논의되었다.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시어티브(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 Finance Initiative, UNEP/FI)에 의하면 '녹색(green)'이란 사회적 · 윤리적 · 환경적 관행(social, ethical and environmental practive)과 관련된 광범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중 특히 환경지향적인(environmentally-oriented) 상품이나 서비스 등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4] 즉, 녹색성장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green)과 경제(growth)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양자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며, 환경을 새로운 동력으로 삼는 경제성장 패턴으로 환경친화적인 새로운 성장 기회를 확보하자는 개념을 담고 있는 '경제 · 환경의 균형적 성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5]

이처럼 녹색성장은 지금까지의 산업발전과정에 녹색기술 · 지식을 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 재활용에너지 등으로 에너지 · 자원 등을 확충하여 생산력을 지속적으로 제고시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녹색성장이 현재는 물론 향후 선진일류국가 건설 및 신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필수 과제임을 고려할 때, 이를 중 ·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금공급 메커니즘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금융적 지원을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녹색금융이라 할 수 있다.

녹색금융은 경제성장과 환경개선 및 금융산업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복합적인 목적을 지닌 미래지향적인 금융으로, 무엇보다 녹색경제활동이라 할 수 있는 저탄소 혹은 환경친화적인 새로운 에너지 · 자원 활성화와 관련된 모든 생산활동 등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6]

3) UNESCAP(2005) 참고.
4) UNEP Finance Initiative(2007) 참고.
5) 노희진, 녹색금융의 발전방향과 추진전략, 자본시장연구원, 2010.6, 9면.
6) 수출금융, 중소기업금융, IT벤처 금융과 같은 성격을 갖는 것으로 Targeted Financing의 한 종류라 할 수 있음(노희진, 앞의 논문, 10면).

녹색금융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금융과 환경 훼손을 방지하는 금융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는 경제 전반의 자원 및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상품과 서비스 생산에 자금을 제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은행을 비롯한 간접금융시장의 여신 지원과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투자와, 녹색성장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자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녹색성장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및 투자수단 제공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투자기회를 확대하는 녹색지수의 개발이나, 녹색펀드의 조성 등을 통해 녹색기술을 개발하거나 환경영향평가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은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주로 자본시장의 금융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후자는 환경 파괴활동에 자금 공급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자율적 심사·감시 메커니즘을 창출하는 금융으로 대출기업의 환경법규위반여부를 조사하거나, 적절한 환경관리의 수행을 여신의 전제조건으로 하는 등 금융기관이 대출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1990년대 미국에서 제정된 CERCLA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법안[7]과 배출권 거래제도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녹색금융은 세부적으로 녹색기업 및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금융지원, 녹색금융 상품화 개발 및 녹색투자자 육성, 환경위험을 고려한 여신 지원, 탄소배출권 및 관련 파생상품의 거래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물론 환경개선과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금융부문은 녹색산업과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자금공급, 환경위험을 고려한 금융 지원, 탄소배출권 시장의 효율적 운영 등을 통해 경제주체가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우리 경제에 중추적인 엔진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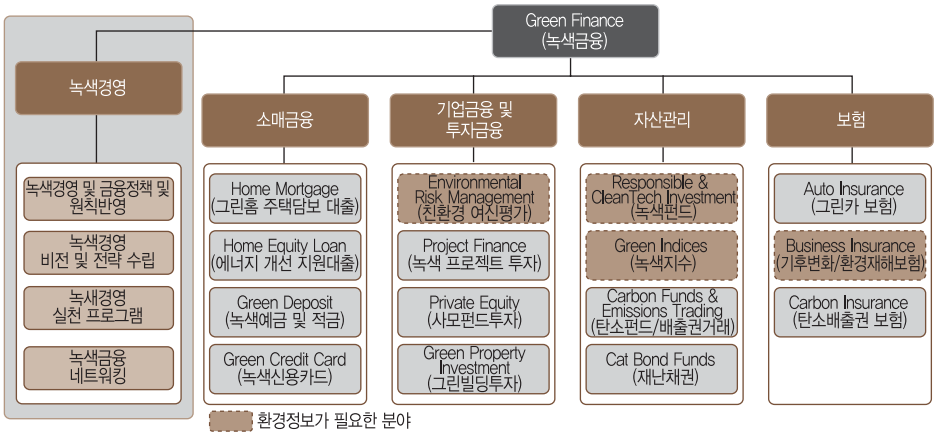

자료: UNEP Financial Initiative, 2007

7) 기업이 환경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 환경정화 비용을 대출금융회사에 부담시키는 대부자 책임규정.

나. 녹색금융의 필요성

녹색금융의 중요성을 인식한 여러 국제기구에서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녹색금융 관련 협약들을 발효시키는 등 환경분야의 중요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1992년 리우 환경정상회의(Rio Summit)에서는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금융기관 선언문(Statement by Banks on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채택하였고, 2009년 1월 세계경제포럼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녹색경제는 에너지효율을 제고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는 작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라며 녹색금융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였다.

이 밖에 유엔환경계획(UNEP)에서는 "그린경제이니시어티브"를 통하여 7,500억 달러[8]를 녹색산업에 투자할 것을 발표하였다. 이처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과 사회적 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SRI)에 관한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등의 국제협약에서는 환경분야와 함께 금융지원에 관한 부분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사회책임투자란 2000년대 후반 이후 등장한 원칙으로 기업투자 시 기업의 재무적 요소 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적, 사회적, 거버넌스적(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요소 등과 같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요소를 고려하여 기업의 투자 기준으로 삼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방식에 기초한 펀드를 사회책임투자펀드라고 부르며,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자발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난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의 핵심정책으로 삼고,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녹색금융 시책 수립[9]과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법제[10]를 마련하는 등 녹색금융의 역할에 점차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이에 우리 기업들도 환경을 중시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영을 추구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 측면을 고려한 지속가능경영(Sustainability management)를 추구하는 형태로 변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녹색금융의 가장 핵심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와 이를 바탕으로 한 탄소펀드의 활성화라 할 수 있다. 탄소펀드란 UN에서 인정한 종류의 CDM사업에 투자하고, 이로부터 발생한 배출권의 거래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녹색펀드의 일종이다. 이는 온실가

8) 이는 2009년 세계 전체 GDP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임.
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8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에 의하여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녹색금융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함.
- 녹색경제 및 녹색산업의 지원 등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자금 지원
-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 기업의 녹색경영 정보에 대한 공시제도 등의 강화 및 녹색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탄소시장(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온실가스의 감축 · 흡수 실적 등을 거래하는)의 개설 및 거래활성화 등

10) 동법 제46조는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배출허용량의 할당 방법, 등록 · 관리 방법 및 거래소 설치 · 운영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스 감축을 위한 시장 활성화를 통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투자수익창출이라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녹색 경영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CSR 경영의 주요 요소로 환경개선을 유인하는 기업에 대한 녹색금융의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시스템이 먼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금융기관들은 녹색금융을 바탕으로 새로운 수익·투자기회 발굴을 위하여 환경리스크 관리에 보다 주목하여야 한다. 이는 과거의 산업형 구조를 환경친화적 구조로 전환하여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추진하는 새로운 경영패러다임인 녹색경영체제를 구축하는 데에 밑바탕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노력은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하거나 신규시장을 창출하는 데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우리 경제성장 및 환경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시급한 과제라 할 것이다.

3. 녹색금융에 관한 해외 동향 및 법제

가. 녹색금융에 관한 국제협약

1)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tive(UNEP FI)

UNEP FI는 UN 환경프로그램(UNEP)과 민간금융부문과의 독특한 국제 제휴로 1991년에 처음 시작되었으며, 이후 도이치(Deutsche)은행, HSBC 홀딩스, 낫웨스트(NatWest, 영국 4대 은행), 로얄 뱅크 캐나다(Royal Bank of Canada), 웨스트팩(Westpac, 호주은행)을 비롯한 상업은행 집단이 UN 환경계획에 동참하며 금융기관의 재무적인 성과와 환경 및 지속가능성 간의 연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였다.

UNEP FI는 약 200여개의 금융기관과 함께 환경, 지속가능성과 재무적 성과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역적 활동, 포괄적 업무 프로그램, 훈련 프로그램 및 연구를 통해 금융기관 운영의 모든 수준에서 최상의 환경적 및 지속가능성 관행 채택을 확인·촉진·실현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11]

현재 가입된 지역은 유럽이 약 40%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아태지역 약 24%, 남미 약 16%, 북미지역과 아프리카·중동지역이 각각 약 10%씩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입기관별 비중으로는 은행 약 62%(144개), 보험 약 22%(50개), 투자은행 약 16%(36개)이다. 2014년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구금융회사, 하나은행, 현대해상보험, KB 국민은행, 삼성화재해상보험, 신한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가입하였다.[12]

2) Global Reporting Initiative 가이드 라인(GRI)

GRI는 1997년 UNEP과 미국의 Coalition for Environmentally Responsible Economies가 함께 설립한 국제기구로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분야 등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되었

11) http://en.wikipedia.org/wiki/United_Nations_Environment_Programme_Finance_Initiative.
12) http://www.unepfi.org/signatories.

다. 이는 1989년 미국의 대형 유조선 엑슨 발데스호가 22만톤의 원유를 실고 알래스카 프린스윌리엄사운드 해안에서 암초에 부딪혀 좌초된 사고로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자, 이후 미국의 환경단체 세리즈(Coalition for Environmentally Responsible Economics, CERES)가 이와 같은 사고 방지를 위하여 UNEP 협약을 통하여 만들어지게 되었다.[13]

본 가이드라인은 재무보고서 정도의 수준까지 이르도록 경제적 · 환경적 · 사회적 성과로 사회적 책임의 틀을 분류하고, 다시 세부적인 지침을 제시하기 위하여 세부화되고, 표준화된 지침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GRI 웹사이트에 공개하여 기업이나 단체, 혹은 일반인들의 관심을 통하여 기업경영에 있어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인식을 강조하고 있다.[14] 따라서 일반 투자자나 사회책임투자자들은 GRI 사이트에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는 기업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가입된 기업 및 기관은 1999년 10개사에서 현재 약 1,600여개 기업으로 증가하였다.

3)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26000

ISO 26000은 기업 이외에 정부, 노조, 시민단체 등 모든 형태의 조직에 적용될 수 있는 사회적 책임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에는 환경, 지배구조, 공정한 운영관행, 인권, 노동관행, 소비자문제, 지역사회참여 등이 포함된다.[15]

이 중 환경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업의 경영 판단과 운영은 환경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환경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있어 환경에 관하여는 공해방지, 자원의 효율적 사용, 기후변화에 대한 완화와 적응, 그리고 자연환경 보호 등이 제시되고 있다.

4) Carbon Disclosure Project(CDP)

CDP는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로 전세계 연기금 투자기관을 포함하여 금융 · 투자기관들을 대신하여 세계 주요 상장회사들로부터 기후변화의 주된 요인인 탄소배출과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와 관련 이슈에 대한 장단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경영전략을 요구,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연구분석을 수행하는 글로벌 프로젝트 기업이다.[16] CDP는 전세계 금융기관과 기관투자자들이 기후변화에 관한 투자리스크나 투자기회에 있어 먼저 기업들의 탄소배출량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2003년부터 매년 기후변화와 관련된 투자위험과 기회, 가능성 및 사업에 대한 평가에 관한 리포트 발간 등 전세계 기업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전략과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정보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17] 이는 약 60여개 국가의 기관들로부터

13) https://www.globalreporting.org/information/about-gri/what-is-GRI/Pages/default.aspx.
14) https://www.globalreporting.org/resourcelibrary/G3.1-Comparison-Sheet.pdf.
15) http://www.iso.org/iso/iso_26000_project_overview.pdf.
16) 노희진, 녹색금융의 국제동향과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2010.6, 31면 참조.
17) https://www.cdproject.net/en-US/Pages/HomePage.aspx.

환경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약 81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CDP는 지속적인 증가로 2011년과 비교하여 2013년에는 11,000여개 회사들로 약 37% 증가하였다.[18]

5) Equator Principle

Equator Principle은 2003년 미국 워싱턴에 국제금융공사(IFC)와 10개의 금융기관 대표자들이 모여 World Bank에서 만든 환경 · 사회 정책기준 준수를 위하여 만든 자발적 행동원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 ·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으로 개도국 · 선진국에 상관없이 1,000만 달러 이상의 사업에 적용된다. 이는 사업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자문의 경우에도 적용하며, 기존 시설을 개량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도 환경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 원칙을 적용하게 된다.[19]

2011년 기준으로 ASN Bank NV, Banco Bradesco, Bank of America, Barclays plc, BNP Paribas, Gitigroup Inc., Credit Suisse Group, HSBC Group, ING Group, KfW IPEX-Bank, Societe Generale 등 77개의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나. 미국의 녹색금융

18) https://www.cdp.net/en-US/WhatWeDo/Pages/cdp-worldwide.aspx.
19) http://www.equator-principles.com/index.php/about-ep/about-ep.
20) Green Bank Act (Bills) Sec. 9801(Green Bank).
(a) Short Title- This section may be cited as the 'Green Bank Act of 2009'.
(b) Purposes-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are as follows:
(1) To evaluate and coordinate financing for qualified clean energy projects and qualified energy efficiency projects.
(2) To provide loans, loan guarantees, debt securitization, insurance, portfolio insurance, and other forms of financing support or risk management to qualified clean energy projects and qualified energy efficiency projects.
(3) To facilitate
(A) efficient tax equity markets for qualified clean energy projects; and
(B) the financing of long-term clean energy purchasing by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not-for-profit entities.
(4) To foster
(A) the development and consistent application of transparent underwriting standards, standard contractual terms, and measurement and verification protocols for qualified clean energy projects and qualified energy efficiency projects;
(B) the creation of performance data that enables effective underwriting, risk management, and pro-forma modeling of financial performance of qualified clean energy projects and qualified energy efficiency projects to support primary financing markets and stimulate development of secondary investment markets for clean energy projects and energy efficiency projects; and
(C) the level of financing support for qualified clean energy projects and qualified energy efficiency projects necessary to advance vital national objectives, including
(i) achieving energy independence from foreign energy sources;
(ii) abating climate change by increasing zero or low carbon electricity generation and transportation capabilities;
(iii) realizing energy efficiency potential in existing infrastructure;
(iv) easing the economic effects of transitioning from a carbon-based economy to a clean energy economy;
(v) achieving job creation through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qualified clean energy projects and qualified energy efficiency projects;
(vi) fostering long-term domestic manufacturing capacity in the clean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industries; and
(vii) complementing and supplementing other clean energy efficiency legislation at the Federal or State level.

1) Green Bank Act(Bills) of 2009

2009년 3월 발의된 Green Bank Act(Bills)는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와 에너지효율화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녹색은행의 설립을 위한 법이다.[20] 동 법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 내 청정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사업을 위해서는 금융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녹색은행이 이러한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위험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21]

동 법안에서 말하는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란 ⓐ 태양열, ⓑ 풍력, ⓒ 지열, ⓓ 바이오매스, ⓔ 수력발전, ⓕ 해양, ⓖ 연료전지, ⓗ 고성능 배터리, ⓘ 탄소 포집 및 격리, ⓙ 차세대 바이오연료, ⓚ 핵 등의 에너지원을 사용하여 온실가스나 대기오염물질 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전기, 변환, 저장, 가열, 냉각 등에 관한 생산절차 또는 에너지시스템이나 기술 등의 개발을 말한다.[22]

또한 "에너지효율화 프로젝트"란 이전에 달성하였던 수준의 결과물을 에너지사용을 감소시키면서 동일한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거나 이전에 발생했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서 동일한 수준의 결과물을

21) Green Bank Act (Bills) Sec. 3102A (Green Bonds)
(a) Initial Capitalization–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shall issue bonds (in this section referred to as 'Green Bonds') in the amount of $10,000,000,000 on the credit of the United States to acquire capital stock of the Green Bank(established under section 9801 of this title), of which not more than $200,000,000 shall be used for costs that the Green Bank incurs for its first year in order to provide loans, loan guarantees, debt securitization, insurance, portfolio insurance, and other forms of financing support or risk management for qualified clean energy projects and qualified energy efficiency projects (as such terms are defined under such section). Stock certificates evidencing ownership in the Green Bank shall be issued by the Green Bank to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to the extent of payments made for the capital stock of the Green Bank.

22) Sec. 9801. (Green Bank) (c) Definitions– In this section:
(1) CLEAN ENERGY PROJECT– The term 'clean energy project' means any electricity generation, transmission, storage, heating, cooling, industrial process, or manufacturing project whose primary purpose is the deployment, development, or production of an energy system or technology that avoids, reduces, or sequesters air pollutants or anthropogenic greenhouse gases, including the following:
(A) Solar
(B) Wind
(C) Geothermal
(D) Biomass
(E) Hydropower
(F) Ocean
(G) Fuel cell
(H) Advanced battery
(I) Carbon capture and sequestration
(J) Next generation biofuels
(K) Nuclear

23) Sec. 9801. (Green Bank) (c) Definitions– In this section:
(2) QUALIFIED CLEAN ENERGY PROJECT– The term 'qualified clean energy project' means a clean energy project that
(A) is carried out domestically within the territorial borders of the United States;
(B) stays current on interest and debt payment obligations;
(C) pays wages in accordance with subchapter IV of chapter 31 of title 40, United States Code (commonly referred to as the Davis–Bacon Act);
(D) if for nuclear power, is funded by the Bank only after all other existing Federal financial support has been expended; and
(E) satisfies any other conditions established by the Bank and published in the Federal Register.

만들어내는 프로젝트, 기술개발, 기능 또는 평가 등을 말한다.[23] 녹색은행은 그 운영에 있어 미국 연방정부가 전체 지분을 소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보다 실효성이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그 독립성을 인정하고 있다.[24]

동 법안에서는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위하여 100억 달러 상당의 녹색채권(Green Bond)을 재무부장관이 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25] 이러한 녹색은행의 설립은 미국 내에서 녹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다 용이하고 적극적으로 금융지원에 관한 시스템을 수립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환경보호와 더불어 미국 기업들의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2)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CERCLA)

CERCLA는 1980년대 미국에서 제정된 법으로 기업이 환경오염을 야기한 경우 이에 대한 환경정화비용을 대출금융기관이 부담하게 하는 대부자 책임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다. 즉, 대출금융기관이 대출심사를 할 경우 투자대상 기업의 환경리스크에 관한 사항까지 철저히 조사하거나 환경과 오염 관련 여부가 대출관련 리스크 판단의 전제조건으로 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 법에 따르면, 대출금융기관이 투자대상기업의 환경리스크를 철저하게 평가하지 않고 대출을 해 준 경우, 설령 해당 기업이 토양오염을 야기하더라도 오염의 책임소재가 분명해지기 전까지는 환경정화비용을 유류세 등으로 조성된 신탁기금에서 지출하도록 하여, 유해물질의 발생에 관여한 모든 잠재적 책임을 기업에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26] 이와 같이 금융기관이 대출조건으로 기업의 환경리스크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들의 환경문제에 관한 대응을 장려하는 것으로 소극적 의미의 녹색금융의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 있다.

다. 일본의 녹색금융 정책

2009년 4월 20일 일본 환경성은 「녹색경제와 사회개혁(緑の経済と社会の改革)」을 통하여 2020년까지 태양광발전 등 환경비즈니스시장을 120조 엔으로 발전시키고, 이에 대한 고용은 280만 명까지 확대하

(3) ENERGY EFFICIENCY PROJECT- The term 'energy efficiency project' means any project, technology, function, or measure that results in the reduction of energy use required to achieve the same level of service or output prior to the application of such project, technology, function, or measure, or substantially reduces greenhouse gas emissions relative to emissions that would have occurred prior to the application of such project, technology, function, or measure.

24) Green Bank Act (Bills) Sec. 9801 (d) (Green Bank)

(1) ESTABLISHMENT OF CORPORATION- There is established a corporation to be known as the Green Bank that shall be wholly owned by the United States.

(2) INDEPENDENT CORPORATION- The Bank shall be an independent corporation. Neither the Bank nor any of its functions, powers, or duties shall be transferred to or consolidated with any other department, agency, or corporation of the Government unless the Congress provides otherwise.

25) Green Bank Act (Bills) Sec. 3102A (Green Bonds)

26) David M. Bearden,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A ummary of Superfund Cleanup Authorities and Related Provisions of the Act,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June 14, 2012.

여 경제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 이전에도 2002년 3월에는 「금융업에 있어서의 환경배려행동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金融業における環境配慮行動に關する調査權急報告書)」, 2006년 7월에는 「환경 등을 배려한 현금흐름의 확대를 향하여(環境等に配慮した「お金」の流れの擴大に向けて)」라는 보고서에서 녹색성장을 통한 경제성장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후 2007년 5월에는 「아름다운 별에의 초대 : 3개의 제안 · 3개의 원칙(Invitation to Cool Earth 50)」, 2008년 7월에는 「저탄소사회 구축행동계획(底炭素社會づくり行動計畵)」을 통하여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현재의 반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27]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지구온난화 문제에 관한 간담회 제언 : 저탄소사회 · 일본을 목표로(地球溫暖化問題に關する懇談會提言 : 底炭素社會 · 日本を目指して)」에서 「저탄소사회 구축행동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이 중에는 「환경비즈니스 등에 자금유입을 원활히 하기 위한 기준과 시스템의 정비(環境ビジネス等に資金を流れやすくするための基準と仕組みの整備)」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녹색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금융 · 자본시장분야에서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녹색금융(환경금융)에 대하여 그 범위와 유형을 명확히 제시하여 금융기관에 대해 책임 있는 투자원칙의 준수, 녹색금융을 위한 활동상황의 공표 촉진 뿐만 아니라 환경관련 융자나 펀드 등 금융기관의 활동에 관한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28]

아울러 일본은 해외 환경산업의 불투명성에 기인한 은행 · 기업 등의 위험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지구환경보험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환경산업성장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에서의 환경산업시장 규모는 2005년에 약 59조 엔이었으며, 이는 2015년에 83조 엔까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29]

4. 녹색금융에 의한 자본조달 사례

앞서 살펴보았듯이,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환경보호와 함께 경제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위하여 환경리스크 관리뿐만 아니라 녹색산업 등의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녹색금융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30] 이러한 녹색금융은 크게 지원과 규제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자발적 친환경 경영을 표방하는 기업들에게 특정 혜택을 부여하는 '녹색금융 인센티브'이며,[31] 두 번째는 환경리스크가 발생함으로써 기인할 수 있는 손실을 강제적으로 줄이기 위해 국가적

27) 全国銀行協会, 金融業における環境事業活動の現状と銀行に期待される役割, 2009.1, 4면.
28) 全国銀行協会, 앞의 논문, 5면.
29) 한국법제연구원, 주요 국가의 녹색금융 법제 연구, 2009, 68면.
30) 임대웅 외(2009), 녹색금융, 이패스코리아, 2009, 57~59면.
31) 대부분의 국가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녹색금융정책으로 조세감면 또는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의 인센티브 정책임. 특히 요즘 녹색산업과 관련하여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자금지원 및 조세감면 등을 제공하고 그린카, 그린홈, 그린빌딩 등 친환경 상품 및 관련 프로젝트에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 등이 포함됨(조봉현, "중소 사업장의 녹색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 「중소기업금융연구」, 2011, 39면).

차원에서 관련 규제를 만들어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녹색금융 리스크 관리' 이다.[32]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환경 · 에너지 문제에 관하여 중장기적인 목표로 10년간 녹색에너지산업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이로부터 500만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EU의 경우에는 2009년에 EU 결속정책으로 환경을 고려한 녹색산업에 1,050억 유로를 투자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EU가 전세계적으로 녹색기술분야의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처럼 주요 선진국에서는 녹색금융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신재생에너지사업, 그린카 등 친환경 상품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세제혜택과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형식의 정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다.

가. 캐나다의 Sustainable Development Techonology Canada

캐나다의 Sustainable Development Techonology Canada(SDTC)는 캐나다 정부가 국민에게 건강한 환경과 양질의 삶을 구현해주기 위하여 10억 5천 달러를 투입하여 설립한 독립기관으로 2개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첫 번째는 SD Tech Fund로 기후변화, 대기의 질, 수질 및 토양에 대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5억 5천만 달러에 이른다. 다른 하나는 NextGen Biofuels Fund로 차세대 재생가능 연료의 대규모 생산설비 설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지원 규모는 5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33] SDTC는 그 지원대상을 공공기관, 학교, NGO, 기업 등으로 하고 있다.

나. 영국의 녹색금융 지원제도

초기 환경정책과 녹색산업 관련 컨설팅회사인 영국의 Climate Change Capital(CCC)은 2005년 UNFCCC의 기후변화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탄소배출권 투자를 위한 펀드 구성을 시작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녹색펀드 등만을 다루는 녹색자산운용사이다. CCC는 기존 컨설팅 조직으로 CDM 투자를 시작으로, CDM 사업이 활발한 중국 북경에 지사를 설립하여 본격적인 CDM 사업을 추진하였다.[34] CDM 사업에 있어서는 현재는 중국, 인도 시장 위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한국 등 동남아시아를 목표로 그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이 밖에 영국에서는 2011년 5월 23일에 30억 파운드 규모의 Green Investment Bank(GIB)를 설립하였다.[35] 동 은행은 2015년에는 150억 파운드의 규모로 성장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철도, 해양풍력발전, 친환경폐기물 관리 등의 녹색사업과 같이 투자위험이 높은 사업과 기업에 있어 금융 지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설립한 것이다.

32) 이는 규제적 특성이 강한 정책으로 기업으로 하여금 법적으로 환경정보 공시를 의무화한다든지, 사업장별로 환경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에서 여신 심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제도들이 이에 해당함. 즉, 이를 바탕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기업들은 투자를 확대할 수 있으나, 이와 반대로 친환경에 반대되는 기업이나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개선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패널티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33) 조봉현, 앞의 논문, 44면 참조.

34) 이후 탄소금융, 사모주식, 부동상, 에너지 인프라 등으로 그 범위를 확장시켜 나갔음(노희진, 녹색금융의 발전방향과 추진전략, 51면 참조).

35) http://www.guardian.co.uk/environment/2011/may/23/clegg-unveils-green-investment-bank.

또한, 스코틀랜드 Alex Salmond 총리는 2012년 10월 10일에 신재생에너지 기술분야의 민간부문 투자 촉진을 위한 1억 300만 파운드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투자기금 출범을 발표하였다. 이번 투자기금은 해양 에너지와 신재생 열에너지 기술 등과 같이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발전되었으나, 충분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야의 지원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이러한 투자기금은 영국의 녹색투자은행이나 그 밖의 청정기술 관련기금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36]

지난 2012년 11월에는 영국 정부의 폐기물 처리에 관하여 GIB에서 폐기물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8,000만 파운드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즉, 투자는 Foresight Group과 Greensphere Capital에서 관리하게 되며, 주로 폐기물 재처리, 재가공 시설물, 사전 처리 그리고 폐기물에서 에너지 추출 등의 프로젝트에 투자할 예정이다.[37]

다. 프랑스의 녹색금융 지원제도

프랑스의 BNP Paribas에서는 사회적 책임차원에서의 녹색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상 모든 항목에서 환경적 요소와 윤리적 요소를 고려하며, 특히 CIB Sustainable Develpoment Team에서는 투자결정시 프로젝트 파이낸스팀에 Equator Principle 적용여부에 따라 투자결정 여부를 정하고 있다.[38] 또한, Societe Generale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프랑스 개발청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투자 인증을 위하여 녹색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투자사업에 대한 우대대출을 시행하고 있다.[39]

이 밖에 Founds de Garantie des Investissements de Maitrise de l'Energie(FOGIME)는 중소기업의 합리적 에너지사용과 지속가능성분야의 투자에 특화된 펀드를 말한다. 이에 대한 전체 예산은 1,780만 유로에 이르며, 중소기업개발은행인 BDPME (Banque de Development des Petiteet Moyens Enterprises)가 940만 유로, 환경 · 에너지관리국인 ADEME(Agence de l'Environnement et de la Maitrise de l'Energie)가 840만 유로를 각각 부담하고 있다.[40]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대출액에 대한 보증비율은 40%인데 반하여, FOGIME는 최대 70%까지 보증하며, 기후보호분야 중 재생에너지에 44억 유로, 에너지효율에 62억 유로를 투자하고 있다. FOGIME에 있어 특징적인 것은 직접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에 대출을 제공한 은행 등 금융기관을 보증한다는 것이며, 대출은 최대 75만 유로까지 가능하다.[41] FOGIME의 보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최

36) http://www.businessgreen.com/bg/news/2216101/scotland-launches-multimillion-pound-fund-to-boost-green-investments.
37) http://www.globalwindow.org/wps/portal/gw2/kcxml/04.
38) 노희진, 「녹색금융의 발전방향과 추진전략」, 48~49면 참조.
39) 아울러 2006년에는 Rhodia사와 합작으로 탄소금융을 위한 Orbeo사를 설립하여, 에너지관리공단의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CER을 판매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탄소비즈니스와 관련하여 프로젝트 발굴 · 자문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음(노희진, 녹색금융의 발전방향과 추진전략, 50면 참조).
40) 조봉현, 앞의 논문, 45면.
41) 단, 은행과 중소기업 모두가 FOGIME의 기준에 적합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초 2년간 대출액의 0.85%를 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했으나, 보증을 받은 프로젝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수수료를 0.60~0.45%까지 하락하였다.

라. 일본의 녹색금융 지원제도

일본의 경우 금융기관이 환경보호와 관련된 활동 혹은 시설투자 등을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금리나 수수료 등의 조건을 우대하는 다양한 녹색금융상품이 있다. 먼저 대표적인 사례는 Eco Action 21[42]로 금융기관이 융자를 하는 경우 환경인증을 취득한 기업에 대해서는 금리를 우대하고 있다. Eco Action 21은 환경성이 환경경영 시스템을 갖추어 환경활동보고서 작성 등 환경보호활동을 실행한 기업에 대하여 심사 · 인증 및 등록 절차를 거친 후 금융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Eco Action 21에 금융지원을 위해서 기업은 먼저 환경오염가중도에 대한 자가체크를 실시하여 자사의 환경활동, 환경포지셔닝에 대하여 계수적 · 정량적으로 기업 스스로 평가를 한 후, 환경 목표를 설정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Eco Action 21 지역 사무국에 신청하여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43] Eco Action 21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등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환경개선을 목표로 하여 이에 대한 실천을 도모하는 제도로 Eco Action 21에 인증 · 등록되었거나 전망되는 기업들은 설비자금과 운영자금에 대한 저리지원이 가능하며,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설비도입에 관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운영자금에 있어서 Eco Action 21 인증 취득비용과 녹색설비 대여비용 등의 경우에는 특별이율이 적용된다.[44]

녹색금융상품에 관하여는 시가은행이 만든 '카본 오프셋 정기예금' 이 있다. 이는 정기예금금액 중 일정 비율(0.1%)분의 배출권을 은행의 비용으로 구입하여, 이를 정부에 이전하는 것이다.[45] 이 밖에 환경을 테마로 하는 투자상품으로는 친환경펀드, 즉 '에코펀드' 가 있다. 이는 사회적 책임투자(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의 일환으로 투자를 할 때, 기업의 재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문제 대응상황과 이에 대한 기업의 경쟁력 · 성장성 및 장래의 주가상승과의 연관성 등을 기준으로 한다. 과거 1999년 8월 닛코증권이 '닛코에코펀드' 를 출시한 이후 일본에서는 SRI를 기초로 하는 펀드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46] 이 밖에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법인에게 우대이율을 적용하는 녹색경영 우대 금융상품인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의 「SMBC-ECO론」도 있다.[47]

---

42) 일본 기업이 효과적 · 효율적인 환경보호를 실행하고 계속적인 개선결과를 공표하도록 환경성이 1995년에 만든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음.
43) 조봉현, 앞의 논문, 40~44면 참조.
44) [Eco Action 21 환경 · 에너지 대책자금]

융자대상		CO_2 배출량 감축(폐열에너지 회수설비, 옥상 녹색화), 폐기물 배출량 감축(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치), 총배수량 감축(빗물저장탱크) 등
지원기간	시설자금	1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운전자금	5년 이내로 최장 7년까지(거치기간 1년 이내로 최장 2년까지)
지원한도		중소기업 사업의 경우 7억2천만엔 (운전자금일 경우 2억5천만엔), 국민생활사업은 7억2백만엔

(조봉현, 앞의 논문, 42면 참조)
45) 김정인, 일본의 배출권 제도와 녹색 금융의 현황, 12면.
46) 장미화, 한국 · 일본 은행들의 녹색금융 추진 비교와 시사점, 신한은행, 2009, 27면 참조.

5.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가. 녹색금융과 관련한 국내 법제 분석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녹색성장의 기본원칙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법으로서 2009년 12월에 제정되어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동 법은 '기후변화대응', '지속가능발전', '에너지효율제고' 라는 정책적 배경 하에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효율화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부처 간 업무 중복의 조정과 지속적인 녹색성장정책 추진을 위하여 '녹색성장위원회' 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또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에서부터 세부수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부문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녹색성장과 관련된 다른 법률을 제 · 개정할 때 원칙을 제공하는 입법지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48]

〈표 1〉「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주요내용[49]

구분	주요내용
녹색성장을 위한 금융시책 (제28조)	- 녹색경제 및 녹색산업의 지원 등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자금 지원 -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녹색성장을 위한 금융시책 (제28조)	-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산업투자회사 설립 - 공공기관이 녹색산업투자회사에 출자하려는 경우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정부가 지원
녹색성장을 위한 금융시책 (제28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녹색기술 · 녹색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 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에 따라 소득세 · 법인세 · 취득세 · 재산세 · 등록세 등 감면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제46조)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에 대비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설정 및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실시 -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실시, 국제협상 및 경쟁력 고려

47) [SMBC-ECO론]

지원대상	-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의 규정을 기준으로 ISO14001, Eco Action 21 등 환경 인증을 취득하였거나, 도쿄도의 지구온난화 대책보고서 제도에 근거해 보고서를 제출한 기업 - 2년이상 운영되었으며,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지점에서 거래가 가능한 지역에 소재 - 최근 결산기에 체무초과가 없고, 신청시점에 세금미납이 없어야 함
융자조건	-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으로 5천만엔 한도로 최장 5년까지 지원가능 - 금리는 1.975%부터이며 변동금리이고, 각종 금리우대제도 있음 (일반적인 비즈니스 셀렉트론 대비 최대 0.25% 우대한 금리 적용)

(조봉현, 앞의 논문, 43면 참조)

48) 박지은, "녹색법제의 범위와 체계," 「법제학술논단」, 2010.7, 18면

49) 배진기, "시동을 건 녹색금융과 향후 과제," 「The Banker」, 2010.8, 39면.

한편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규정되어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녹색인증제도'는 녹색기술 및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녹색기업으로 확인해주는 녹색기업 확인제도로 녹색산업에 관한 지원에 있어 보다 절차상 효율화에 기여하고 있다.[50]

〈표 2〉 녹색인증 추진현황(2014년 11월 17일 기준)[51]

구분	인증신청	인증확정
녹색기술인증	3,354	1,833
녹색사업인증	546	348
녹색전문기업	275	213
합계	4,308	2,429

2) 은행 녹색금융 운용 모범규준

녹색인증제도가 제정됨에 따라 비과세 녹색예금과 녹색대출 상품개발이 가능해져 녹색금융상품 개발과 운용에 따른 기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자, 이에 은행연합회에서는 2010년 6월 30일에 녹색금융의 가이드라인으로 '은행 녹색금융 운용 모범규준'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동 가이드라인에는 비과세 녹색상품 개발에 따른 고객보호와 녹색금융에 대한 프로세스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한 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다.[52]

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2008년부터 교토의정서에 따른 1차 온실가스 감축

〈표 3〉 '은행 녹색금융 운용 모범규준'의 주요내용

구분	내용
상품개발 및 고객보호	제5조(녹색예금 · 녹색채권의 명칭) - 녹색예금 · 녹색채권 명칭에 '비과세 녹색금융' 포함 제7조(설명의무) - 녹색예금 · 녹색채권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비과세 요건 · 한도 등 중요사항 기재 및 고객 설명
녹색금융 프로세스 마련	제8조(녹색금융 관리체계) - 녹색금융 업무를 총괄할 의사결정기구 설치 및 종합적 관리체계 마련 제11조 · 제12조(심사 및 절차, 환경리스크 분석) - 녹색금융 투자 및 지원 여부 결정 시 신용위험,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하고 환경리스크도 고려하여 분석 제13조(금리 및 수수료) - 금리 및 수수료 산정기준을 설정하고, 은행자산의 건전성이 저해되지 안는 범위 내에서 녹색금융 지원 기준 마련 및 운용
녹색금융 리스크 관리	제16조(리스크 관리체계) - 리스크 관리 규정 및 관리체계를 통해 녹색금융 관린 위험평가 및 관리 제18조(사후관리) - 녹색금융 지원 후 자금의 용도 외 유용여부 및 사업현황 파악

50) 배진기, 앞의 글, 40면.
51) 녹색인증 홈페이지(www.greencertif.or.kr).
52) 배진기, 앞의 글, 41면.

의무 이행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도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나, 2009년 12월 코펜하겐 기후협약에서 우리나라는 탄소감축 의무국이 아닌 자발적 감축체제를 적용받게 되었다. 하지만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강화와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된다고 볼 때, 이에 대한 대비와 또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량이 OECD 국가 중 10위 안에 차지하고 있는 실정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은 시급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 정부는 2020년까지 배출권 전망치 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을 제정하였으며, 동 제도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53]

4) 현행 자본시장법상 탄소배출권의 지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표 4〉 배출권거래법의 주요내용[54]

구분	주요내용
도입 시기	- 2015년 1월 1일(1차 계획기간: 2015년~2017년, 2차 계획기간: 2018년~2020년, 3차 계획기간: 2021년~2025년)
적용대상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목표관리제 적용받는 업체 중 탄소배출량이 연평균 총량이 125,000 혹은 25,000 CO_2-eq 이상인 업체 - 자발적으로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업체
관리부서	- 배출권 할당 밈 거래에 대한 심의 · 조정 기능을 가진 배출권 할당위원회 설치(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방식	- 계획기간의 총 배출권 및 이행연도별 배출권에 대한 유 · 무상 할당제 운영 - 1차 계획기간의 무상할당비율은 100% - 2차 계획기간의 무상할당 비율은 97% 이하 - 3차 계획기간의 무상할당 비율은 90% 이하
	- 이산화탄소 1톤 단위로 배출권 매매 거래 허용 - 거래 안정성을 위한 배출권 거래소 지정 및 설치 가능 - 거래와 관련된 규정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준용
배출량의 보고/제출	- 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배출량을 측정 · 보고하고, 배출량 인증 위원회에서 심의 - 인증 받은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주무관청에서 제출하며,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을 허용하고 그 내역은 배출권등록부에 등록 -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배출권 전환 허용(별도의 상쇄 등록부에서 관리)
과징금	- 인증 받은 배출량 초과 시 이산화탄소 1톤당 평균시장가격의 3배 이하의 과징금 부과
지원제도	- 탄소배출 감축설비 설치 및 기술 개발에 대해 금융 · 세제상 혜택 또는 보조금 지급

53) 정희수,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따른 녹색금융의 재조명," 「The Banker」, 2011.7, 60면.
54) 정희수, 앞의 글, 61면.

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을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정하고 있다(동법 제3조 제2항). 증권에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이 있는 바(동법 제4조), 탄소배출권이 채무증권(동조 제3항) · 지분증권(동조 제4항) · 수익증권(동조 제5항) · 투자계약증권(동조 제6항) · 증권예탁증권(동조 제8항)에 해당하지 않음은 문언상 명백하다. 또한 파생결합증권은 파생상품의 성격을 갖는 증권으로 탄소배출권이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탄소배출권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동법은 "자연적 · 환경적 · 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 · 이자율 · 지표 · 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은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에(동법 제4조 제10항 제5호), 탄소배출권은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볼 수 있다.[55]

나. 국내 녹색금융의 현황 및 한계점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초반부터 녹색성장 등에 관심을 가지고 일부 금융기관에서 녹색금융과 관련된 상품을 출시하였다.[56] 이후 신한은행에서는 '신한솔라파워론' 등 녹색성장산업 관련 대출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2008년에는 우리은행에서 '우리그린솔라론' 등을 출시하였다. 하지만, 관련 산업의 경제성 · 경쟁력 등의 미검증으로 인하여 여신 실적의 저조로 인하여 본 상품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57] 현재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녹색성장 · 녹색금융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여 2000년대 들어서야 이미 세계 주요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제3세계 금융기관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던 UNEP FI에 참여하기 시작하였고, 이 뿐만 아니라 현재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Equator Principle에 가입한 금융기관도 아직 없다고 한다.

2009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2012년 배출권거래제법의 제정으로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녹색금융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녹색금융의 기능을 단순히 녹색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책 정도로만 한정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주요 선진국의 경우 환경리스크관리를 일반화하여 투자 결정 및 범위를 판단하는 주요국의 은행과 달리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은 전혀 환경리스크에 관하여 진지한 위협 또는 기회 요소로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더 나아가 얼마 전 구미지역의 불산유출사건과 같은 큰 환경재난에 대비하는 대응책으로서의 금융기관의 환경책임 부담에 대해 제도에 관하여는 아직까지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단지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과 법제 등에 따라 일부 은행에서 녹색금융 관련 상품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아직은 홍보적 효과를 제외한 실질적 효과는 없으며, 녹색금융 관련 펀드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실제 운용에 있어서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크지 않다는 점은 보

55) 김은정,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선진상사법률연구」, 제60호, 2012.10, 100면.
56)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삼성투신운용이 수익성과 환경보호의 결합, 환경 관련 기업에 대한 장기 투자로 적정 수익률 확보, 그리고 펀드를 통한 지속적인 환경 감시 역할 및 사회적 책임 제고라는 목표 아래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에코 펀드를 발매하였음.
57) 장미화, 앞의 논문, 26면.

다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58]

다. 국내 녹색금융상품 활성화 방안

1) 기존 녹색금융상품의 한계

녹색금융은 현 녹색산업의 개발 중이라는 한계로 인하여 그 사업상 불확실성이 크며, 투자회수기간이 장기간이 걸려 그 활성화가 쉽지 않다. 또한, 외부효과가 크기 때문에 시장기능에만 의존하는 금융메커니즘만으로 충분한 투자자금을 유입하는 것은 무리이며, 이에 재정을 통한 지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59] 따라서 녹색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별 금융기관의 차원에서보다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논의한 주요국의 사례를 고려할 때, 우리의 경우에는 특히 금융기관에 대한 환경 관련 규제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며, 또 그 동안 사회적 압력 또한 높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과 제도 구축에 대한 노력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60]

2) 환경리스크 현황에 대한 감독

금융감독원과 같은 감독기관에서 금융기관의 환경리스크 현황에 대한 감독을 시행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환경리스크관리시스템의 도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환경리스크 관리감독에 관한 시스템의 도입은 환경친화적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향후 녹색성장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도모하는 하나의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61] 국내 금융기관들은 기후변화의 위험을 반영한 포트폴리오의 재평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자기혁신 및 브랜드 관리, 그리고 이해당사자들과의 공조 등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62]

3) 금융기관의 자발적 협약 유도

녹색금융과 관련된 금융기관의 자발적 협약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미 세계적 차원에서 UNEP FI 및 Equator Principle 등 여러 가지 환경 관련 금융기관 협약이 존재하며, 주요국의 금융기관들은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극소수의 대형 금융기관만이 이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녹색금융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큰 부담을 갖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약 마련이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다.[63]

4) 민간 차원의 녹색 투자 유도

58) 2001년 우리나라 최초의 에코펀드가 출시된 이래 다수의 녹색금융 관련 펀드가 출시되었으며, 이에는 환경, SRI 및 지배구조 관련 펀드 등이 포함되어 있음(홍정훈, "녹색금융의 전개 과정과 우리나라에서의 활성화 방안," 「KRX Market」, 한국거래소, 2009, 43면).
59) 사회적 수익 〉 사적 수익(기획재정부,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 보도자료, 2009년).
60) 홍정훈, 앞의 보고서, 44~45면.
61) 홍정훈, 앞의 보고서, 45면.
62) 박영석,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경영전략," 「기은연구」, IBK경제연구소, 2009, 55면.
63) 홍정훈, 앞의 보고서, 45면.

고위험 · 고수익인 녹색산업에 대한 시장성 우려, 은행의 위험자산 증가 부담 등으로 인한 소극적 여신 관행, 일부 대기업에 대한 투자 편중,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민간 차원의 녹색 투자는 현재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시장기대에 부응하는 투자대상 프로젝트가 다수 배출되고, 불확실성이 경감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과 제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을 배려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익성과 리스크 분석을 위한 금융기관의 정보 · 전문인력 확충 등 전문성 보완을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64]

참고문헌

〈국내 문헌〉

관계부처 합동, 녹색경쟁력 확충을 위한 재정 · 금융 지원 강화방안, 2010.7.13

김은정,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선진상사법률연구」, 제60호, 2012.10

김정인, 일본의 배출권 제도와 녹색 금융의 현황, 2009.11

노희진, 녹색금융의 발전방향과 추진전략, 자본시장연구원, 2010.6

_____, 녹색금융의 국제동향과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2010.6

박지은, "녹색법제의 범위와 체계," 「법제학술논단」, 2010.7

배진기, "시동을 건 녹색금융과 향후 과제," 「The Banker」, 2010.8

임대웅 외, 녹색금융, 이패스코리아, 2009

장미화, 한국 · 일본 은행들의 녹색금융 추진 비교와 시사점, 신한은행, 2009

정희수,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따른 녹색금융의 재조명," 「The Banker」, 2011.7

조봉현, "중소 사업장의 녹색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 「중소기업금융연구」, 2011.

홍정훈, "녹색금융의 전개 과정과 우리나라에서의 활성화 방안", 「KRX Market」, 한국거래소, 2009.

박영석,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경영전략," 「기은연구」, IBK경제연구소, 2009.

〈외국 문헌〉

David M. Bearden,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A ummary of Superfund Cleanup Authorities and Related Provisions of the Act,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June 14, 2012

UNEP, Finance Initiative, 2007

UNESCAP, 2005

全國銀行協會, 金融業における環境事業活動の現狀と銀行に期待される役割, 2009.1

64) 관계부처 합동, 녹색경쟁력 확충을 위한 재정 · 금융 지원 강화방안, 2010.7.13, 5면.